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2. 오선균 의원외 4인
나. 회부일자 : 2011. 5. 13.
다. 상정일자 : 2011. 5. 20.(제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오선균 위원)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기적의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적의 도서관의 위치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을 규정 (안 제1조 내지 제3조)
- 기적의 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4조)
- 도서관의 이용시간, 자료대출, 사용허가, 변상책임 등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운영의 위탁·위탁의 철회,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조직, 관장의 선임,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내지 제24조)
- 도서자료의 위탁 및 기증, 자료구입, 자료 관리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 내지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제천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 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시간, 자료대출, 변상등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

한 사항과

-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기능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 도서관의 위·수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시가 MBC 느낌표와 책읽는 사회문화사업재단과의 공모사업으로 건립, 2003년 개관한 이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그동안 기적의 도서관은 위탁 협약서와 기적의 도서관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법제2조 4호의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공중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활동에 제공되는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 기적의 도서관 이용관계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수탁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정·투명하게 운영 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답변자 : 오선균 위원, 시립도서관장)

- 질의) 안 제16조 위원회 기능에 우리 관장의 임명 추천과 연임에 관한 사항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20조에 관장의 선임, 거기 지금 3항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임을 전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20조에 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꽃임 위원)

답변)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오선균 위원)

- 질의) 어린이 도서관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을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 관장 나이가 57세로 되어 있는데 57세로 지금 다른 어린이 도서관 관장의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지? (조덕희 위원)

답변) 제가 현재 다른 도서관에 관장 정년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57세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운영규정상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주변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학부모께서 관

장이나 직원들이 나이가 많은 것을 조금며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공무원 정년규정도 이번에 60세로 개정이 되어서 향후 60세 까지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때 상향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7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질의) 향후는 우리 공무원들도 60세까지 가고 있으니까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이 계시면 60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덕희 위원)

답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여지를 드리고서 57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질의) 다음에 수탁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 위원회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조덕희 위원)

답변)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지금 현재 5인 내지 7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측에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질의) 그래서 전에 보면은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거의가 관장으로 내려 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관장님 이해하고 있죠?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질의) 그래서 수탁위원회 구성이 거의 서울사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관장으로 지금 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수탁위원이 제천분으로 이루어 져서 제천에 홀릉하신 분이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조덕희 위원)

답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저희지역에 있는 분들뿐 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외부에서도 영입을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분들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선정하겠고요. 관장은 우리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국 공모를 거쳐는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질의) 물론 관장님의 생각도 좋고 그래서 서울서 내려 온 분들이 결코 좋은 분도 내려 왔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될 수 있으면 제천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수탁위원회 구성을 좀더 검토를 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답변) 예, 알겠습니다. (장권 시립도서관장)

5. 토론요지

- 조례안 중 상위 법적용 오류를 바로잡고, 안 조문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 표기중 부적합한 문구를 수정하며, 경과조치의 미비된 조항을 삽입

6. 심사내용

- 김꽃임의원의 5인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 ⇒ “이의없음”으로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8. 심사결과

“수정 가결”

9.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중 제1조 “도서관법 제40조”를 “도서관법 제27조”로 수정하고,
- 제3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
- 제4조 제3호의 조문중 “주최”를 “개최”로 수정하고,
- 제20조 제3항을 삭제하며,
-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시 기관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제27조</p> <p>_____</p> <p>_____</p> <p>_____</p> |
| <p>제3조(정의) 2. "수수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p> <p>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p> <p>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 <p>2. <삭제></p> <p>3. <삭제></p> <p>2. _____</p> <p>3. _____</p> |
| <p>제4조(기능)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p> | <p>제4조(기능) 3.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개최</p> |
| <p>제20조(관장의 선임) ③ 위원회는 관장의 운영능력이 타월하다고 판단되고 수탁기관이 제 선임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역임을 건의할 수 있다.</p> <p>④ 관장은 수탁기간 내에 정년이 도래 되지 않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p> | <p>제20조(관장의 선임) ③ <삭제></p> <p>③ _____</p> |
|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p> |